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전자책(e-book)'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Problems with the Right of Publication by the Copyright Law and Some Innovations
- Focusing on the Problems of E-books -

김 기 태(Ki-Tae Kim)*

초 록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 · 발효된 현행 저작권법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매체환경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추가된 '전송권'은 저작물의 이용환경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무한 가상의 공간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송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한 탓에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이를 둘러싼 대립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현상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출판분야이다. 즉, 기존의 출판권과 신생권리인 전송권,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복제권에 관한 조항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출판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수익모델에 관한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자책'이라는 용어가 관련법규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근본문제에서부터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출판권이 새롭게 조망되어야 함을 밝히고, 향후 저작권법 개정에 있어 디지털 출판의 개념이 전격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BSTRACT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copyright law revised and proclaimed on July 1, 2000 on the ground that the law embraces digital medium environments. The transmission right added to the economic rights takes into account the fact that limitless cyber space represented by the Internet came to be pervasive. This is based on a lot of exhausting conflicts between those with copyrights and Internet users. The area of publication is badly afflicted in this sense, falling into confusion due to the miscomprehension of differences among the right of publication, the right of transmission and the right of reproduction. The term 'e-book' is not covered by relevant laws despite the widespread use of e-books.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designed to point to the necessity of dealing with the right of publication with the problems of the copyright law emphasized and to ask for the aggressive reflection of the concept of digital publication in the future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키워드: 저작권법, 출판권, 전자책, 전송권, 전자출판, copyright law, e-book

---

*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kkt21@semyung.ac.kr)
논문접수일자 2001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01년 12월 10일

1. 서 론

1.1 문제의 제기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저작권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2000년 1월 12일자로 개정되어 7월 1일자로 발효된 현행 저작권법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매체환경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야흐로 저작환경 또한 디지털 정보와 밀접한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추가된 '전송권(傳送權)'은 기존의 여섯 가지 권리, 즉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시권 · 배포권 ·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에 있어 그것들의 이용환경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무한가상의 공간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인정한 결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전송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한 탓에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이를 둘러싼 대립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그 결과 저작권자들은 권리의 확대만을 주장함으로써 이용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고, 이용자들 또한 기득권과 새로운 권리 사이에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소모성 논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출판분야이다. 즉, 기존의 출판권과 신생권리인 전송권,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복제권에 관한 조항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출판권은 1957년에 제정된 구저작권법에서부터 줄곧 주요사항으로 명시되어 왔고,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제3장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매체환경을 반영하여 대폭 개정된 2000년도 개정법에서 출판권 조항은 단 한 군데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는 전통적인 매체로서 출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여전히 아날로그 매체로만 한정함으로써 출판매체의 디지털화 양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미 도처에서 이른바 '전자책(e-book)'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그 기술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마치 종이책의 장례절차가 논의될 듯한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시점이다.[1] 그러나 저작권 전문가를 포함하여 많은 출판인들이 전자책의 기술적 문제에만 집착했지, 정작 그로 인해 생겨날 법적, 실무적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유수의 작가들이 전자책 개발업체와 앞다투어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을 맺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출판사들이 확보하고 있는 출판권마저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위기의식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 하면 기존의 '출판권'으로는 새로운 '전송권'에 대항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

1) 최초로 상용화된 전자책은 1998년 11월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인 누보미디어가 내놓은 'Rocket eBook'으로 알려져 있다. 문고판 책 크기로 무게는 0.6킬로그램 정도이지만 종이책을 기준으로 4천 쪽을 담을 수 있다. 책을 내려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분에서 5분 정도이며, 비용은 인쇄된 책보다 훨씬 저렴하다. 전자책 단말기에서 책의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2000년 5월 현재 약 24만 원(199달러)에 시판되고 있다.

1.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출판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수익모델에 관한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자책(e-book); 이하 전자책이라 함'이라는 용어가 관련법규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근본문제에서부터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출판권이 새롭게 조망되어야 함을 밝히고, 향후 저작권법 개정에 있어 디지털 출판의 개념이 전격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에 입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저작권법에 있어 최근 개정된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2) 전자책의 개념은 무엇이며, 이것이 안고 있는 저작권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3) 저작권법상 전자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기타 관련 단체의 자료들을 참조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2. 저작권법상 출판 및 출판권의 개념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出版權)이란,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文書) 또는 도화(圖畵)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출판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출판자가 이러한 출판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함에 있어서 원권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자와 그에 따른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우리 출판계의 관행은 문서에 의한 출판계약보다는 구두(口頭)에 의한 것이 많았기에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김기태 1994).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출판계에서 많이 이용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는 출판계약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승헌 1988).

첫째,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약정의 예를 들 수 있다.

물론 말로써 이루어지는 약정도 계약이 전혀 없었던 상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법적인 효력을 갖지만, 견해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객관적 판단의 근거가 없으므로 입증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기억과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정당한 쪽의 권리가 반드시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겠다.

둘째, 문서에 의한 출판허락계약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저작권자가 출판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출판자는 그 저작물을 이용 형태에 맞게, 즉 출판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출판허락계약과 독점출판허락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허락계약은 비독점적이며 비배타적인 효력을 갖

는 것으로, 출판권자는 저작권자가 다른 출판자에게 같은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준다 해도 대항할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독점허락계약에 있어서도 채권적(債權的)인 효력밖에 없으므로 계약위반이 생겼을 경우에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 대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추궁만 할 수 있을 뿐 제3의 출판자에 대하여 직접 항의하거나 출판물 배포의 금지 또는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셋째, 출판권설정계약의 유형이 있다.

이는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과는 달리 설정계약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발행하는 내용의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으로, 저작물의 직접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설정출판권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당연히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까지도 생긴다.

흔히 저작권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권의 보호조항을 출판허락계약의 경우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즉,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판허락계약에 의한 채권적 권리와 설정출판권이 갖는 준물권적(準物權的)인 배타적 권리를 똑같은 '출판권'이라는 이름으로 혼동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에 있어서도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2] 즉, 저작권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권의 존속 기간, 출판자의 의무, 출판권의 소멸 등에 관한 것은 오늘날 흔하게 행해지고 있는 출판허락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이란 출판할 권리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출판권설정계약에 의해 생기는 준물권적인 '설정출판권'만을 뜻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출판과 관련된 복제 및 배포는 물론 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저작재산권의 일부인 복제권 및 배포권을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복제·배포권 양도계약'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저작재산권자의 주요 권리가 출판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출판자는 출판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형태에 대한 권리까지도 보장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므로, 실제적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황적인, 최현호 1990). 따라서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너무 얽매이지 않는 출판허락계약을 선호한다면 출판자로서는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등록에 의해 대항력까지 갖출 수 있는 출판권설정계약 및 양도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설정출판권에 대한 저작권법의 규정을 살피기로 한다(김기태 2000b).

앞서 살핀 것처럼 저작권법 제54조[3]는 출판권의 설정에 관한 규정이다. '설정'이란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 새로이 제한적인 물권 따위의 배타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출판권 역시 그러한 설정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제1항에서는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음을 밝

2) 물권(物權)은 어떤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로부터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絶對權)이지만, 채권(債權)은 특정의 채무자(債務者)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相對權)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히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용어에 대한 뜻을 살필 필요가 있다. 먼저 '복제권자'라는 말에 있어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하였으므로 저작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복제권과 배포권을 일괄하여 표현한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출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다음의 내용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제1항에서는 출판을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발행이란 곧 복제와 배포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제2조 제16호 참조).

한편, 복제의 여러 방법 중에서도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녹음 또는 녹화에 의한 복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문서 또는 도화'라고 하여 그것이 서적이나 잡지 또는 화집(畵集)이나 사진집, 그리고 악보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제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이 선보이고 있는 비종이책, 즉 오디오북 또는 비디오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나 CD-ROM,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전자책(e-book)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출판이란, "저작물을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문서 또는 도화의 형태로 복제해서 그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출판권'이라 하며, 그러한 출판권을 복제권자로부터 설정받은 사람을 '출판권자'라 하는 것이다.

제2항에서는 출판권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출판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설정 행위에서 정하는 바'라는 것은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행위에 따라 만들어진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뜻한다. 따라서 출판시기, 출판방법, 발행부수, 인세조건 등이 그것이며, 출판권자는 그러한 내용대로만 출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겠다.[4] 또한 이후의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권자의 의무, 제57조의 출판권의 존속기간, 제5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등과 관련하여 또 다른 약정사항도 설정행위로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원작(原作) 그대로"라는 표현은 저작인격권의 일종인 동일성유지권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제13조 참조). 따라서 오자(誤字) 또는

---

3) 제54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또 다른 견해로는 출판물의 판형(版型), 활자(活字)의 선택, 제본(製本)의 방법, 장정(裝幀) 등과 같은 복제방법은 물론 판(版)의 수와 같은 복제부수까지 설정행위에 있어서의 출판권의 내용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출판권자의 권능을 지나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배타성이 있는 출판권을 공시(公示)함에 있어서도 복잡하고 실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견해가 더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탈자(脫字)나 맞춤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태가 변하는 것, 즉 번역(飜譯)이나 개작(改作)에 의한 출판행위는 별도의 설정행위가 없는 한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번역 또는 개작에 따른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권리가 번역 또는 개작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제3항에서는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복제권자가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판권을 설정하는 복제권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판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작권등록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출판권을 설정받은 후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정내용을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저작재산권이라 하지 않고 복제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제권을 포함하는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었을 경우에도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출판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3. 개정저작권법상의 출판관련 주요 내용

3.1 온라인상 저작물 송신에 대한 '전송권' 신설

이번 개정 저작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전송'에 관한 정의규정(제2조 제9호의 2)의 신설과 함께 저작재산권에 '전송권'을 추가로 규정(제18조의 2)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송'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고 함으로써 새로운 권리로서의 '전송권'을 신설하고 있는 것이다.

'전송권'의 신설은 한마디로 디지털 환경이 무르익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상의 저작물 송신이 보편화되고, 또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작물을 전달하는 형태의 기술진전은 새로운 권리의 등장을 촉진했던 것이다.

원래 전송권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달권(Right of coumminication to the Public)'을 수용한 것으로, 기존의 공연·방송·배포의 개념과는 달리 1대1, 이시송신(異時送信), 쌍방향성 및 무형성 등과 같은 특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서 우리 역시 디지털 송신으로서 '전송(Transmission)'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추가로 저작자에게 부여한 것이다.[5] 또 전송에는 직접 송신뿐만 아니라 이용제공 행위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송신 설비만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5) 따라서 전송권을 영문으로 표기한다면 아날로그 상황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Transmission Right'라고 하기보다는 엄격한 의미에서 'Digital Transmission Right'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행위는 제외된다.

아울러 권리침해죄에 '전송'을 포함(제97조의 5)하여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벌칙의 강화라는 측면과 함께 디지털 매체환경을 법제적으로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2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내 전송의 허용

또한 이번 개정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를 규정한 제28조를 부분개정하는 한편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6]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출판계로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 동안 사실상의 무단복제가 도서관을 통해 성행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복제까지 허용함으로써 그로 인한 폐해가 더욱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28조 제2항은 2000년 개정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디지털 환경이 급속도로 정착됨에 따라 이른바 전자도서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일부 제한하여, 도서관 내에서 열람을 목적으로 디지털 복제 및 다른 도서관으로의 전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 규정은 도서관 등이 저작권, 출판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제1항의 아날로그 복제가 가능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범위와 제2항의 디지털 복제 및 전송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제1항에서와는 달리 제2항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 단서 규정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

---

6) 도서관끼리의 상호전송을 둘러싸고 출판계의 우려가 증폭되었으나 2001년 6월 4일자로 입법예고된 문화관광부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 조항을 다시 개정하여 도서관끼리의 상호 전송은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중임을 알 수 있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서관 등이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아날로그 형태의 복제만을 허용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디지털 형태의 복제도 허용함.(안 제28조제1항)

나.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28조제1항1호 단서 신설)

다. 종전에는 도서 등의 도서관간 복제·전송을 무제한 허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서 등의 당해 도서관등의 관내 열람을 목적으로 한 복제·전송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함.(안 제28조제2항)

라. 관내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내에서의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토록 함.(안 제28조제2항 단서 신설)

마.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전송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8조 제3항 신설)

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복제 및 전송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 국립도서관[7]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서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도서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도서관

한편,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 이외의 다른 도서관에서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으로부터 복제물을 전송받아 자체 서버에 저장하여 관내 열람용으로 서비스하는 행위는 자체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가 다시 디지털 복제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정한 것으로,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와 이용방법 내에서는 이용자가 도서관, 가정, 직장 등에서 도서관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새로 출범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서는 저작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전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신창환 2000).

하지만 제28조 제2항에서는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을 벗어난 관외 이용자에 대한 전송은 물론 관내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출력과 전산기억장치에의 저장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실 디지털 저작물의 특성상 일단 저작자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 복제의 용이성과 신속성, 그리고 전파(傳播)의 광범위성 때문에 권리침해 정도는 기존 저작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우려가 매우 높다. 이러한 디지털 속성을 고려해서 법으로 허용한 범위 이외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불법이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로서

- 당해 시설과 저작권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컴퓨터 등의 화면에 자료를 나타나게 하는 자료현시(資料現示) 이외의 방법으로는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 외의 자가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
- 컴퓨터 등의 화면상의 자료현시 이외의 방법으로 도서를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7) 여기서 말하는 '국립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그리고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산업대학교·전문대학 등의 도서관을 가리킨다.

-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둘째,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 교육

셋째, 컴퓨터 등에 경고 표지의 부착

여기서 첫 번째로 규정한 기술적인 조치는 곧 복제방지장치, 암호화조치, 이용 및 변경 확인 조치와 판매용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등의 설치로 요약할 수 있다. 복제방지장치란, 저작물에의 접근을 통제하지는 않지만 이용방법 중에서 자료현시(screen display)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와 전송을 하는 것은 금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 암호화조치란, 저작물이 당해 도서관과 다른 도서관 이외의 장소에 유출되지 않도록 저작물을 특정한 형태로 변환한 뒤 이를 다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회복시키는 장치로, 도서 등을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 이외의 장소에 유출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 또한 이미 CD-ROM 등 전자기록매체의 형태로 유통되는 판매용 저작물은 저작자 및 매체제작자가 이미 상당한 투자를 기울인 결과물임을 고려해서 도서관에서는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디지털 복제의 경우 그것은 원본과 똑같이, 혹은 더욱 정밀하게 복제가 가능하고, 양적인 면에서도 거의 무한대라는 점에서 이번에 개정 또는 신설된 도서관 등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상호전송 허용규정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걷잡을 수 없는 무단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3.3 디지털 복제의 수용

또한 '복제'의 정의규정에 디지털 복제를 포함(제2조 제14호 개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즉,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라고 하여 새롭게 복제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복제(複製; reproduction)는 저작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예시하고 있는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 양상을 반영하여 2000년도 개정법에서는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이외에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켜 디지털 복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다만,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이용시 거치게 되는 램(RAM)에의 저장과 같은 일시적 저장 행위를 저작권법상 복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접근법이 강구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개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주에 넣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시적 저장 행위가 저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김태훈 2000).

3.4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사적복제의 범위에서 제외

한편, 제27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사적이용

(私的利用, private use)을 위한 복제'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고 있는 점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출판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 즉 "다만,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적이용의 허용이 곧 복사기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던 업체들까지 면책됨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스스로의 필요 때문에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해서 이용하거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해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이는 영리추구를 위한 대량복제처럼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가정에 준하는 소규모의 인원이 폐쇄된 공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므로,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고 한 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단독의 개인은 아니지만 가정처럼 개인적 결합 관계로 모인 소규모 인원—대체적으로 10인 이내—으로서 폐쇄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소규모라 하더라도 회사 같은 곳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복사기, 녹음 및 녹화기 등의 대량보급과 복제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복사기를 비롯한 복제기기의 출현은 원래 사무자동화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지만, 지금은 그 이용 범위가 매우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제에 따른 비용 또한 저렴해짐으로써 이용자의 폭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 따라 저작물 및 출판물의 권리자들에게 위기의식이 생겨나고, 복사 및 녹음·녹화에 의한 복제물 제작이 심각한 저작권 침해의 요소를 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wu 왔다. 왜냐하면 일단 복제된 저작물은 사적 이용의 단계를 넘어서 많은 사람의 모임을 통해 교환, 대여 또는 판매의 방법으로 반출되기도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높은데도 그러한 행위들이 위법임을 인식시키거나 구체적으로 검증하여 적발해 낼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적인 이용형태로는 아무래도 복사기에 의한 출판물의 복제일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사적이용의 범주를 넘어서는 행위를 가려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제27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이대로의 해석에 따른다면 미묘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어느 개인이 문구점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저작물 또는 출판물을 복사하는 경우에 그 개인은 분명히 개인적 용도에 따라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적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문구점 주인의 입장에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복사해 준 것이므로 위법이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개인이 복사기를 갖추고 있기 어려운 탓에 대부분 복사 전문 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복제기기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여 '사적복제

보상금제도(私的複製補償金制度)'를 시행하고 있다.[8] 즉, 복제기기—복사기, 녹음기, 녹화기 또는 녹음 및 녹화용 수록 매체인 공테이프 등—를 생산하는 업체는 그러한 기기를 배포할 때 일정액의 보상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몇 차례 있었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문화체육부 1993).[9] 그러던 중 2000년도 개정법에서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적 복제의 허용환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허용규정은 저작물의 일반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가의 복사점 등에서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위탁하거나 무인복사기 등에서 저작물을 복사하는 것은 앞서 살핀 것처럼 복사기의 설치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당연히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2000년도 개정법에서는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되는 사적 복제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출판물 불법 복제로 인한 저작자 및 출판사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복사 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예를 따라 이용자가 간단한 수속을 밟음으로써 저작물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집중 관리하는 복사권집중관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권리자 단체가 연합하여 앞서 언급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10]를 창립한 바 있다.

3.5 저작권 등록업무에 출판권설정등록을 포함

또 '출판권의 양도제한 등'에 출판권 설정등록을 명시(제60조 개정)함으로써 설정출판권의 등록에 따른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상속 및 기타 일반승계를 제외한 '출판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의 경우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제52조 참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문화관

8) 독일에서는 복제기기가 제작되어 발매되는 시점에 판매가의 일정 비율을 사적복제보상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일본서적출판협회가 중심이 되고 문화청이 지원하여 설립된 '복사권 센터'라는 기구가 있어서 복사기를 이용한 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9) 이에 따르면, 복제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맨 처음 배포할 때 일정의 보상금을 원천부과하며, 그 권리자는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그리고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로서 그 행사는 지정단체를 통하여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권리자 측의 주장과 복제기기 업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결국에는 개정 법률안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말았다.

10) 2000년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저작자 및 출판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이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저작권법에서 면책하고 있는 범위 이외의 저작물 이용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집중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부 장관이 '출판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제53조 참조). 물론 이때의 출판권 등록은 출판권의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단순히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점은 명백하다.[11]

4. 전자책의 개념 및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4.1 전자책의 개념 및 특성

지금까지 전자책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명확한 정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는 선행 연구자들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 동안 공표된 전자책에 관한 개념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곽동철(2000)은 "콘텐츠(contents)라고 불리고 있는 컴퓨터 파일로 이루어진 전문(Full Text)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개인용 정보 단말기(PDA), 전자종이(Electronic Paper) 등에서 읽을 수 있는,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문화관광부(2000)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eBook은 단말기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화면책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단말기를 뜻할 때에는 화면책 읽는 장치를 말한다. 그러나 화면책의 뜻으로 eBook을 말할 때에는 PC로 읽는 통신망용 책을 말한다. 통신망에 연결하여 읽는 책과 하드웨어인 단말기를 지적할 때를 혼동한다는 것이다. eBook은 화면책의 한 종류로서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디지털 책을 읽는 전용 단말기 하드웨어이다. 둘째는 종이책의 내용을 워드프로세서로 쳐서 인터넷에 올려놓는 글틀 버전의 파일로 된 오프라인 화면책을 말한다. 셋째는 텍스트에 오디오와 비디오가 추가된 멀티미디어 화면책을 말한다. 출판분야에서 말하는 eBook은 하드웨어가 아닌 출판물로서의 eBook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보다 최근의 연구로는 성대훈(2000)의 견해가 있다. 즉, "전자책은 저작자의 메시지를 전달자에 의해 디지털 형태로 가공(편집 및 레이아웃, 디지털로 변환된 자료)하여 전자저장매체(CD-ROM, CD-I, DVD)에 담거나 또는 전

11) 원래 저작권은 헌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그 보호에 있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없다. 다만, '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① 추정력: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사람은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사람은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게 되며, 이러한 추정사실을 부인하려는 사람이 법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입증책임전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② 대항력: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등의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근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변동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보호기간의 연장: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성명등록을 하게 되면 보호기간이 공표 후 50년에서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며, 단체명의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연월일을 등록하게 되면 창작 후 50년에서 등록된 공표연월일을 기준으로 50년이 되는 효과가 있다.

자책 파일의 형태를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유통되어 전자책 전용뷰어나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보는 형태와 전자 단말기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새로운 출판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결국 전자책이란 기존의 종이책과는 달리 컴퓨터 파일 형태의 출판물을 전용 뷰어(viewer)를 통하여 컴퓨터나 전용 단말기로 읽는 디지털 출판물을 말한다. 한편으로는 내용으로서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전용 뷰어로, 하드웨어는 전자책 단말기로 분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자책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하는 것은 물론 전용 뷰어를 통하여 개인용 컴퓨터나 단말기, 개인용 정보 단말기로 볼 수 있는 디지털 출판 영역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전자책은 또한 종이책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면에서 장점을 지닌다(성대훈 2000).

① 비용의 절감: 전자책은 기존의 종이책에 비하여 조판비용이나 용지대, 인쇄비 및 제본비, 발송비 등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제작 및 유통에 따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12] 아울러 반품과 재고의 염려가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② 휴대의 편의성: 전자책 전용 단말기나 복합 단말기에 데이터화된 여러 권의 책을 휴대하는 형식이므로 부피가 큰 종이책을 여러 권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③ 비거리성: 전자책은 인터넷과 접목되어 있어 거리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 곧 서점에 가는 시간, 구매하는 시간, 또는 온라인 구매 후 기다리는 시간 등을 초월할 수 있다.

④ 영구성: 기존의 종이책은 종이의 수명이나 제본의 견고성 여부에 따라 책의 보존 기간이 결정된다. 그러나 전자책은 그것의 유지와 보관이 용이하며 영구히 보존 가능하다.

⑤ 변형성: 전자책은 변형성이 뛰어나다. 즉, 전자책은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의 종이책은 정형화되어 있어 어떠한 변형도 할 수 없는 반면, 전자책은 이른바 '다중이용(one-source multi-use)'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⑥ 환경 보호: 전자책 제작에는 종이가 전혀 필요 없다는 점에서 펄프의 원료가 되는 나무의 벌채는 물론 인쇄과정에서의 잉크 및 각종 약품 사용이 억제됨으로써 환경 오염과 배송 과정에서의 차량 이용에 따른 대기 오염 등을 줄일 수 있다.

⑦ 멀티미디어화: 음악,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가 포함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전자책 상호간의 하이퍼 링크가 가능하다.

⑧ 기능성: 전자책은 책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임의대로 메모를 하거나 밑줄을 긋고 다시 지우거나 할 수 있고, 책의 내용을 검색하거나 사전을 탑재하여 복합적인 독서를 가능하게 해준다(박근수 2000).

⑨ 저렴한 가격: 국내에서의 전자책 가격은 종이책의 40% 내지 50% 선에서 책정되고 있다. 이는 개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종이책에 비

12) 그러나 이러한 비용 절감은 기존의 종이책을 그대로 전자책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일 멀티미디어 기능과 동영상 저작물이 첨부된 전자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오히려 종이책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하여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전자책의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⑩ 신속한 업그레이드: 전자책은 기술적인 특성상 그것이 담고 있는 콘텐츠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 기존 종이책에서는 이미 발행된 도서가 소진되었을 경우 수정 사항 등을 재판에서 수정하여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안고 있었지만, 전자책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일시에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오래 전에 절판된 책이나 잡지를 디지털화하여 다시 볼 수 있다거나 그 동안 산업적 측면에서 영리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출판되지 못했던 많은 전문분야 도서들이 전자책의 형태로 쉽게 출판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자책이 일반화된다면 학생들이 무거운 책가방을 일일이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자책은 그것의 기술적인 부분에서부터 법적·제도적 부분에 이르기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안고 있다. 전자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거나 우려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정비용의 증가: 전자책을 읽기 위한 판독 장치(단말기 등)를 구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용자의 고정비용이 증가하게 된다.[13]

② 소프트웨어 설치에 따른 번거로움 증가: 여러 가지 형태의 소프트웨어와 단말기 사양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다.

③ 완벽한 보안장치 개발의 어려움: 내용이 디지털로 표현되는 만큼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특성에 따라 완벽한 보안장치의 개발이 어렵다는 점 또한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④ 가독성의 문제: 기존의 종이책에 비하여 그것의 해상도나 전용 폰트의 문제로 인하여 가독성이 좋지 못하다는 점 등이 큰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⑤ 저작권 사용료의 증가: 종이책을 재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멀티미디어 형태의 전자책을 지향할 경우 그것의 복합 저작물성 때문에 저작권 사용료의 지불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4.2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전자책이 안고 있는 저작권법상 문제점의 근간은 '출판권'과의 괴리에서 시작된다. 즉, 2000년도 개정 저작권법에서 신설하고 있는 '전송'의 개념과 저작재산권상의 '전송권'이 기존 출판권 개념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출판과 전자책 생산이 별개의 법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전자책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특성은 곧 '전송'의 개념에는 부합하지만 '출판'의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물권(物權)에 상당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

13) 한국출판연구소 주관으로 1999년도에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연간 독서량이 평균 9.3권에 불과한데, 전자책 단말기의 가격은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상회함으로써 종이책 한 권의 가격을 평균 8천 원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45권 가량의 종이책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단번에 들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만일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또 이러한 권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접권을 양도함으로써 행사하게 된다. 이용자는 권리자와 이용허락계약이나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완전한 이용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양도계약에 있어서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간적, 공간적으로 조건을 정하게 마련인데, 이 경우 이용자는 해당 양도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 안에서 직접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용허락계약의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채권계약에 불과하므로 제3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만이 물권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곧 이용자는 권리자의 처분에 맡겨 간접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결국 계약상 침해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 규정과 구상권 규정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직접 침해자를 상대로 권리 구제를 받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출판사들이 이른바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출판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판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출판권 설정계약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출판사는 제3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직접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설정출판권은 곧 물권적인 성격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정출판권은 설정자(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가 설정되는 것으로서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전자책의 탄생과 발달은 이러한 출판권 설정계약이 법률적으로 보완되어야 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책은 그것의 기술적 특성상 기술적 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그리고 보안의 문제 등에 있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저작권법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김기태 2000a).

4.3 개선방향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저작권법에 의하면 기존의 '출판권'과 이번에 신설된 '전송권'은 전혀 다른 것이다. 우선 출판권에 관한 규정과 전송권에 관한 규정 자체가 이질적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곧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권의 설정' 규정을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제1항에 따르면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판권과 이번에 신설된 '전송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즉,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전송에 관한 규정과는 부합하는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출판권설정이 되어 있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저작재산권자가 임의로 전송권을 발휘하여 새로운 이용을 허락하더라도-- 여기서의 새로운 이용이란 곧 '전자책'을 포함한다-- 출판권자로서는 이에 저항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결국 새로운 전송권 설정계약을 맺지 않는 한 우리 출판사들은 새로운 이용형태에 관한 권리를 모두 상실할 수도 있으며, 향후 개발업체들의 공세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 복제의 여러 방법 중에서도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녹음 또는 녹화에 의한 복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문서 또는 도화'라고 하여 그것이 서적이나 잡지 또는 화집(畵集)이나 사진집, 그리고 악보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제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이 선보이고 있는 비종이책, 즉 오디오북 또는 비디오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나 CD-ROM,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전자책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출판이란, "저작물을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문서 또는 도화의 형태로 복제해서 그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출판권'이라 하며, 그러한 출판권을 복제권자로부터 설정받은 사람이 곧 '출판권자'가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형태의 도서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출판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저작권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 또는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 제2조 정의규정에 '출판'을 신설

- 출판 :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과 전자적 장치로써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전송에 의하여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기존의 도서[14]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장 '출판권' 관련조항을 개정

- 제54조 제1항 '출판권의 설정' : 저작물을 복제·전송·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 및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15]

하지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합리적인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출판계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현재로서는 기존의 출판권설정계약서와 함께 전송권설정계약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저작권법상의 '출

14) 이 같은 정의적 표현이 가능하려면 우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비롯한 일련의 관련법률에서 우선 출판을 전자책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15) 1993년 개정된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자출판물이란 "문자 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유형의 전자매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러한 전자출판물에 무조건 출판권 설정 개념을 도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책의 경우에도 모든 매체에 적용되지 않는, 기존의 도서에 부합할 수 있는 정의적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판권'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려는 노력, 더 나아가 정의규정에 전자형태를 포함하는 '출판' 또는 '도서'에 관한 명시규정을 신설하려는 노력이 범출판계의 염원으로 가시화되고, 다음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법제화로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성을 갖고 있다(오승종, 이해완 1999). 먼저 창조과정과 이용과정에 있어서 세 가지 두드러진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누군가가 지적 창작을 함에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둘째, 창작자가 아닌 사람은 창작자보다 훨씬 적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으로 그 창작물을 모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다른 사람의 그 창작물에 대한 이용이 적어도 물리적으로는 창작자의 이용과 부딪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저작권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립되는 입장을 상호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창작을 장려할 것인가 아니면 경쟁을 장려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소유권을 소유권으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독점권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창작을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만일 창작자 이외의 사람이 창작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창작자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창작물을 모방하여도 좋다면 그 누구에게서도 창작 의욕이 생겨날 수 없으며, 비록 창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최초로 생산하거나 배포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가리켜 이른바 '무임승차'(free ride) 효과라고 한다. 반대로 경쟁을 장려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생산자들 사이의 자유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다분히 소비자적인 관점에서의 주장이다. 즉, 경쟁을 통해서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가격 체감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정당한 권리로서 보호하면 할수록 도서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소비자 및 일반공중의 이용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를 소유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은 주로 대륙법계의 사고방식으로 지적 창작물은 창작자의 완전한 소유물이지 독점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창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완전한 독점적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그것이 반경쟁적(anti-competitive)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독점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은 주로 영미법계의 사고방식으로 지적 창작물에 대하여 창조자가 갖는 권리는 완전한 소유권과는 다른 독점권의 한 형태로서 독점금지법(Antitrust Law) 또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미법계에서는 이 같은 독점금지법의 정신 및 전통적인 계약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

적 창작물이 공개됨으로써 사회 일반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기여를 하였을 때에만 그에 대한 대가(quid pro quo)로서 보호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권리라 함은 '법에서 인정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크게 보아 공권(公權)과 사권(私權)이 있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자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사권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권은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의 재산적·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권에는 민법상의 물권과 채권이 대표적이며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 반면, 인격권은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의 일신에 전속하고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저작권에는 재산권과 인격권이 포괄되어 있어서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저작권은 물권에서처럼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무체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소유권은 영구적인 데 비하여 보호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저작권은 특허권 등과 함께 무체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다만,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의 공업소유권 혹은 산업재산권은 그것이 개인의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16]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권리가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어떠한 절차나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성질이 다르다.

아울러 이 조항에서는 저작권법이 단순히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여 주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출판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규제의 수단이라는 단순한 인식은 저작권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결국 저작권 제도는 최초로 만들어 낸 것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표현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문학·예술·과학·문화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즉, 저작권이란 "창의성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주어지는 법적 대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듯 창작물을 저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물은 곧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좋은 저작물이 많이 나와야 그 사회가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저작자에게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저작자가 장기간 노력하여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저작자로서는 창작 행위를 계속하지 않

16) 특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發明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용신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考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意匠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商標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것이 분명하여 사회의 발전을 기약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저작자에게 굳이 저작권을 부여해서 보호하는 이유는 그 권리의 행사를 통해 창작을 위한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창작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작권은 어디까지나 문화의 산물이다. 문화는 곧 인간이 창조하고 면면히 계승하는 것이며, 그것의 주체는 또한 인간이다. 앞으로 기술은 점점 발전해 나갈 것이고, 저작물을 표현하는 매체의 양상 또한 날로 첨단화할 것이다. 전자책 역시 인간이 창조해 낸 문화의 일부이며, 이것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인류문화의 향상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첨단매체로서의 전자책에 대하여 단순히 기술만을 보호하려는 근시안적인 법과 제도를 고집한다면 또 다른 책의 유형이 등장했을 때 똑같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에 수천 년 인류문화에 봉사해 온 '책'의 본질을 헤아리는 미래지향적인 법과 제도의 정착을 위한 연구와 실천이 뒤따라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곽동철. 2000. 전자도서(eBook) 유통과 도서관의 역할.『도서관』, 55(2): 3-24.

김기태. 1994.『출판저작권 현장연구』. 서울: 타래.

김기태. 2000a.『뉴미디어의 기술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김기태. 2000b.『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서울: 삼진기획.

김태훈. 2000. 개정저작권법 해설.『저작권 강연회 자료집』.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문화관광부. 2000.『한국 전자책(eBook) 산업 발전방안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문화체육부. 1993.『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서울〕: 문화체육부.

박근수. 2000. 전자책의 현황과 발전방향.『디지털 시대의 전자책(ebook) 발전방향』.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출판연구소〕.

성대훈. 2000.『국내 전자책(eBook) 서비스업체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신창환. 2000. 개정 저작권법령 해설.『개정 저작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회 자료집』.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오승종, 이해완. 1999.『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한승헌. 1988.『저작권의 법제와 실무』. 서울: 삼민사.

황적인, 최현호. 1990.『저작물과 출판권』. 서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